

## 2026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·접수 공고

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,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으로 농업환경 보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「2026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」 신청·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8. 1.

양 주 시 장

### 1. 지원개요

- 사업 목적
  -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, 생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 도모
- 지원 자격 및 요건
  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기도 내 거주(소재) 농업인(농업법인)
  - ※ 농지는 양주시 관내에 있고, 해당 필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함

#### < 우선지원 대상 >

- 신규신청자
-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
  - \* '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자' 단, 자조금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대상자로 간주
-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참여 농업인

## ○ 지원내용 및 예산

- 지원 내용 :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(장기연질필름), 생분해성 멀칭제

※ 가용예산대비 수요가 많을 경우, 장기연질필름 우선 지원

- 지원 기준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
- 지원 단가(상한액)

·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1중 신규 및 교체비용 : 단동형 9,000원/m<sup>2</sup>, 연동형 10,000원/m<sup>2</sup> [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(개폐파이프, 물받이 등) 포함]

※ 자가 시공할 경우, 인건비는 제외하여 사업비 산출

■ 온실 면적 330m<sup>2</sup>이상「월에-특작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(농식품부 고시 제2016-180호)」의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

※ 농식품부 고시 제2016-180호 이전 고시에서 지정된 내재해형 규격시설도 지원 가능

■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관련 사업을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사업장(필지, 시설)은 지원 배제

■ 일반필름(첨가형 필름)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· 생분해성 멀칭제 : 170원/m<sup>2</sup> (농지면적 기준)

## 2. 신청.접수

○ 수요조사기간 : 2025. 8. 1.(금) ~ 8. 6.(수) 17:00

○ 신청접수기간 : 2025. 8. 1.(금) ~ 9. 5.(금) 17:00

○ 신청방법 : 방문(또는 우편, 이메일) 제출

○ 제출서류(시행지침 별지 제1호 참조)

-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1부.

-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.

- 견적서 1부.

○ 제출처

-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(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, 3층)

## 3. 선정 및 통지

○ 선정예정 : 2026년 3월 중

※ 금회 공모는 경기도 예산확보를 위한 예비사업자 모집으로, 최종 사업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당해연도(2026년 3월 예정)에 결정

○ 선정방법 : 자체 심의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

○ 통지방법 : 보조금 교부결정서 개별 송부

#### 4. 기타

-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은 붙임의 2025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문의 :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(☎031-8082-6121)

- 붙임 1. 사업시행지침 1부.  
2. 신청서식 1부.  
3.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. 끝.